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89p 문항 ③ 번호 : 70	문제-문항	70 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·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. ② 항만시설보안심사는 최초보안심사, 갱신보안심사, 중간보안심사로 구분된다. ③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·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④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「보안업무규정」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. 쑥쑥해설 해양수산부장관은 <u>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때에</u>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·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(이하 “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(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6조 제2항 제1문). 정답 ③	70 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·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. ② 항만시설보안심사는 최초보안심사, 갱신보안심사, 중간보안심사로 구분된다. ③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해야만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·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④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「보안업무규정」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. 쑥쑥해설 해양수산부장관은 <u>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</u>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·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(이하 “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(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6조 제2항 제1문). 정답 ③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